

第109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3月15日(木) 11時19分

###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09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3. 區政質問의 件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 附議된案件

1. 第109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1面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 2面
3. 區政質問의 件 ..... 2面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安載弘議員 外 3人 發議) ..... 3面

(11時19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黃義振 事務局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黃義振 事務局長 黃義振입니다.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安載弘議員 外 7人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0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써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2월 22일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

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서 2001년 2월 2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黃義振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 1. 第109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11時22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3월 15일부터 2001년 3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議事日程**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11時23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09회 종로구의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吳錦南 議員과 千相旭 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區政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安載弘 議員이 신청함에 따라 같은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安載弘 議員!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 議員 安載弘 議員입니다. 최근 관내 지역에서 주민 1,800여 명이 서명 날인한 납골당 설치 등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면 납골묘나 납골탑, 납골당 등의 납골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기존 사찰 경내에 시

설하는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약 104개소의 사찰과 11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단체가 증장기적으로 납골시설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에서 제3종까지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설을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주민의 주거환경과 기타 교통 등의 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9일 우리 구는 관내 삼청동, 혜화동,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 등 일부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의 규제완화와 자연경관지구의 용도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증장기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법은 정비가 되어야 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여객자동차 부지에 부당한 행정규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 20일경까지 동기능의 전환과 관련해 시설공사가 14개 곳의 동사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 볼 때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 공사가 좋은 계절을 피하여 월동기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급히 시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安載弘議員外 3人 發議)

(11時29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安載弘議員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洪承台	安載弘	李東奎	吳錦南
吳弼根	劉燦鍾	朴鍾植	

